

금융거래정보·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

(앞쪽)

-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: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
- 정보제공 목적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한 금융거래(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잔액에 관한 자료(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부동산 보유·등기, 과세정보(지적, 건축,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
- 동의서 유효기간: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
- 등록의무자(정보제공 요청자)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
5. 동의자(등록의무자 포함) 인적사항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휴대전화번호	제공 정보 (해당 항목에 "√" 표시)					정보 제공에 동의함 (서명 또는 인)
				금융 거래	부동산	가상 자산	자동차	회원권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				[]	[]	[]	[]	[]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·신고를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·등기, 과세정보,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유의사항

1.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
※ '정보 제공 동의'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.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,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.

3. 정보제공 범위

- 재산 등록·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
- 부동산 보유·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
-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자료
- 회원권 보유 정보에 관한 자료

※ 금융거래정보·부동산정보 등은 재산 등록·신고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.

4. 정보제공 금융기관명

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-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·공단 등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